

관련된 대한수학회의 정관, 세칙과 규정

대한수학회의 정관

제 1 조 (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리과학의 연구와 보급을 진흥하고, 과학의 제 부문과 협력하여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필요한 도서의 간행 및 배포
3. 수학에 관한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비, 조사 및 교환
4. 학술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대한수학회의 정관시행세칙

제 18 조 (학술지)

① 정관 제 4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수학회 회지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2. 대한수학회 회보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3. 대한수학회 논문집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② 각 학술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지와 회보는 영문에 의한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2. 논문집은 국문 또는 영문에 의한 연구논문과 해설논문, 연구기사 등을 게재한다.

③ 각 학술지의 연간 간행 횟수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회 지 : 년 6 회 간행 (1 월, 3 월, 5 월, 7 월, 9 월, 11 월)
2. 회 보 : 년 6 회 간행 (1 월, 3 월, 5 월, 7 월, 9 월, 11 월)
3. 논문집 : 년 4 회 간행 (1 월, 4 월, 7 월, 10 월)

4. 각 학술지는 국내외의 연구발표지, 학회의 학술지와 교환한다.

제 33 조 (편집위원회)

1. 정관세칙 18 조에 규정된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3 인 가운데 회장이 지명한다.

2.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위촉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 부터 3 년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담당이사 3 인을 포함하여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 편집위원회 및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 논문 투고 및 심사와 학술지 발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 ☞ 기타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편집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소집권자는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대한수학회의 논문심사규정

제 1 조 (준거) 대한수학회 정관 제 4 조 2 항과 정관시행세칙 제 18 조, 제 33 조 ④항 2 호에 의거, 논문심사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 8 조 (재심불가)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은 재심을 요구할 수 없다.

제 9 조 (기타 결정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